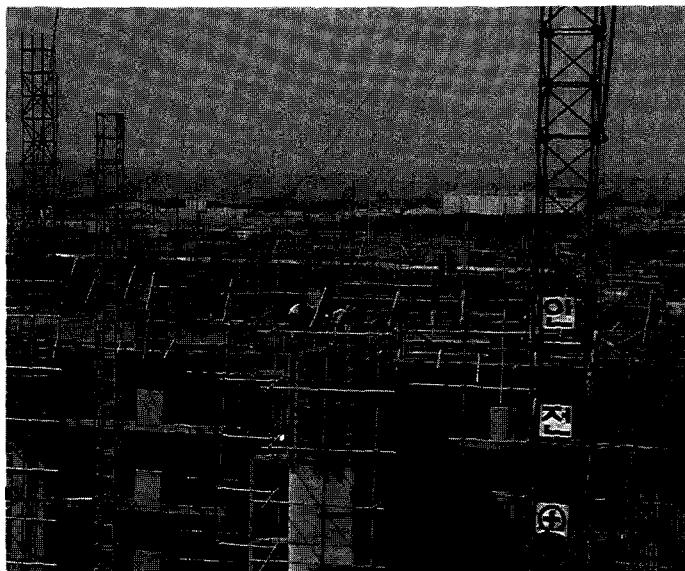


'94년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내용



표준품셈은 1962년부터 현재까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단위공종에 소요되는 인력, 자재 및 장비, 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현행 표준품셈은 총 1천4백30개 항목중 기계설비는 2백4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품, 인력품을 기계화품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품, 또는 신공법·신자재·신장비 등에 대한 품을 매년 50~70개

선정하여 각 시행기관에서 실사를 실시하고, 여기에서 수집된 실사자료를 토대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표준품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보완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이 제정되어 이에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므로 하수부문에 대한 품(하수관준설, 하수차집관거준설, 하수관 수밀시험, 하수관내 C.C.T.V 조사, 하수관 천공 및 접합)을 신설하였고, 신공법으로서 전회전식 말뚝공법, 프리프렉스빔 제작, 색

조포장공, 섬유대 호안공등을 신설하여 설계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그러면 기계설비분야의 주요내용을 간추려 본다.

[1] 주요자재

현행 적용기준 1-7 주요자재 항목에는 KS규격품을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일선 벌주기관에서는 이를 경직되게 운용하여 성능은 우수하지만 KS를 획득하지 못한 건설자재의 사용이 제한되므로서 기술발전에 저해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어 기술관리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한국산업규격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로 우선 사용토록 하였다.

[2] 공구손료 및 잡재료 등

현행 적용기준에서 공구손료는 노임할증을 제외한 직접노무비의 3%까지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손료는 사용시간의 함수이므로 공구손료 계산시 적용되는 직접노무비 중 도서지구할증 등 작업시간증가에 의하지 않은 품할증을 제외토록 하여 이중계산이 되지 않도록 원칙을 제시하였다.

[3] 동관배관

대규모 아파트 세대에 대한 난방코일 배관은 주로 공장에서 코일을 가공하여 현장에 반입시 공하므로 2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세대에 바닥난방 코일배관을 공장 제작하여 시공할 경우 현행 동관 배관 공량에 10%를 감하도록 하고, 최근에는 용접방법을 Brazeing이 아닌 Soldering으로 접합하는 공법이 개발되어 이에대한 품을 신설하였다.

[4] 입상관 방진기대

수직으로 서있는 관의 진동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스프링과 클램프 등으로 구성된 방진기대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이에대한 품을 신설하였다.

[5] 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공사

해당 항목중 해석상 혼선을 주는 용어인 「R·C류」를 「Belt Conveyor류」로 명확하게 정비하여 설계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6] 소변기 세정용 전자감응기 설치(신설)
소변기 세정용 전자감응기 설치품이 없어 이를 신설하였다.

[7] 바닥배수구 설치(신설)

바닥배수구를 설치하는 품이 없어 이를 신설하였다.

[8] 플랜트 배관공사의 비파괴검사 적용

장거리 배관공사의 해설란중 비파괴검사 KS1급 적용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공량할증을 플랜트 배관, 강관전기아크용접에서의 경우와 같이 임의규정으로 바꾸어 설계자가 현장 특성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용어를 비파괴검사로 통일하였다.

[9] 강판전기아크

해설란의 작업효율 적용에 있어서 일선기관으로부터 문의가 잦아 작업효율적용방법에 대한 계산예를 명시하였다.

[10] 파이프보온

현행 파이프보온은 파이프 외경 750mm 이상의 경우 DUCT 보온과 같이 취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적용상에 혼선이 있을 뿐 아니라 DUCT보온은 파이프보온의 기본사양과도 시공방법이 다르므로 750mm 이상의 경우에는 현행 750mm의 품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보온두께 91mm 이상의 경우 관에 대한 보온공과 특별 인부의 공량 산출공식을 만들어 적용토록 하였다.

[11] 보일러 설치

현행 보일러 설치 항목중 Tube Pannel, Header류 및 Buckstay 조립과정은 과거 규모가 작은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여 단위가 개당 공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커진 요즈음에는 잘 맞지 않아 단위를 TON당 공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므로 50만KW 이상 보일러 설치에 있어서 Tube Pannel, Header류 및 Buckstay 조립조정 공량을 톤단 공량으로 하여 [참고] 항목으로 신설·보완하였다.

[12] 터빈설치

터빈설치중 점검 및 조정 항목과 Rotor 표면 손질 항목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오자를 수정하였다.